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52,842,755	58,585,283
일반회계	1,729,933,394	51,898,002
특별회계	222,909,361	6,687,281
공기업특별회계	176,149,347	5,284,4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329,115	2,739,8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820,232	2,544,607
기타특별회계	46,760,014	1,402,800
주택사업특별회계	85,000	2,5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678,957	350,36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265,000	307,950
교통사업특별회계	21,801,906	654,057
대지보상특별회계	450,000	13,500
수질개선특별회계	1,775,151	53,255

제 2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51,485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